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ㅇ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년12월14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하수과장 윤범수)

□ 제안이유

○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물,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시 하수도법 및 조례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부합 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하수발생량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정함.(안 제21조제3항)

○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함. (안제22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　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　음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60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제출년월일 : 2002.11. 22.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물,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시 하수도법 및 조례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하수발생량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정함.(안 제21조제3항)

○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함.(안 제22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중 " 준공공사" 를 " 준공검사" 로 한다.

제21조제1항중 "구청장은"을 " 시장은" 으로 한다.

제2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가산금)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배수설비 준공공사)(생략)	제5조의2(배수설비 준공검사)(현행과 같음)
제21조(원인자부담금)①구청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 1.~3.(생략) ②(생략) <신설> ③(생략)	제21조(원인자부담금)①시장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~3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한다. ④(종전의 제3항과 같음)
제22조(가산금)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해 사용료,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	제22조(가산금)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.